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학생회칙



강릉원주대
사학과 34대 학생회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학생회칙

<전문>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는 인문학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학도로서 학문에 정진하고 학우들 간 친목과 공생을 하며 대학이라는 사회집단에서 스스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기에 그에 따른 규칙을 규정하고자 아래와 같은 학생회칙을 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본회는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자치를 실현하고, 회원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회원들 간의 소통과 원활한 연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본회는 회원 간 평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전과나 편입의 경우 또한 동일하다.

제 4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2. 정회원은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소속의 휴학 중인 자로 한다.
4. 명예 회원은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소속의 졸업자로 한다.
5. 자퇴, 전과, 편입 등으로 사학과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운영 활동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본회를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준회원, 명예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본회의 자치 활동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

리를 동일하게 가진다.

5. 본회의 준회원은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활동에 당해 집행부가 책정한 금액을 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책정 금액이 입금된 이후만 가능하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부인하거나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할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원 간의 의사 결정권을 비난하지 않는다. 단, 회원의 인권이 유린된 경우 위 일은 형법대로 처리한다.
3.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 탄핵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학과 학우로써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
4.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7조 <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단, 집행부, 학년대표(과대표)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단, 특별기구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제 2조 <목적>에 준한다.

[제 2장 총회]

제 8조 <지위>

사학과 학생 총회(이하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제 9조 <구성>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인원은 정회원 전체로 하며, 준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제 10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이 담당한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담당한다.
2. 탄핵 발의의 경우 발의자 대표 1인이 의장을 담당한다.

제 11조 <업무와 권한>

총회가 상정할 수 있는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심의 의결권
2. 예산·결산 심의 의결권
3. 회칙개정 발의 및 의결권
4. 탄핵 발의 및 의결권
5. 답사 관련 심의 의결권
6. 기타 학과 제반 사항 설명

제 12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와 학기 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 단독,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서신이나 구두 연락 등의 통보도 할 수 있다.
4. 학생회장단 및 학년 대표 탄핵 발의 시 발의자 대표 1인이 소집한다.

제 13조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생회칙 개정 및 탄핵 발의는 출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가 무산될 경우 의결 안건은 학생회장단, 집행부, 학년 대표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제 14조 <탄핵>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부대표가 직무 수행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탄핵 결의를 할 수 있다.

2. '중대한 과오'라 함은 정회원 1/2 이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인정되었을 시, 위와 같이 칭한다. 단,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손해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은 피해자가 단 1명 일지라도 '중대한 과오'로 칭한다.
3. 학생회장단 탄핵은 정회원 1/2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학년 대표 탄핵은 해당 학년 정회원 1/2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5. 발의 즉시 발의자 대표 1인이 비정기 총회(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 의결을 할 수 있다. 의결이 되었다면 발의자 또는 의장은 총회 소집 7일 이내에 공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회장단, 학년 대표 탄핵의 발의자는 그 근거를 학년별 공지 또는 총회에서 공지하도록 하되, 결코 타 단과대학 또는 타 학과 학우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한다.
7. 학회장 탄핵 시, 발의자 또는 총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공포 이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칙 8장에 근거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15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본회 최고의 상시적 운영기구이다. 총회가 무산되었을 경우 대신하여 의결 승인할 수 있다.

제 1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집행부를 포함하여 각 학년 대표로 구성된다.

제 17조 <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담당하며, 부의장은 부학생회장이 담당한다.

제 18조 <업무 및 권한>

1. 총회가 무산되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처리
2. 회칙개정 발의권
3. 회장단, 집행부, 과대표 탄핵 발의권
4. 임시총회 소집 발의권
5. 학과 학생회비 관련 심의
6. 제 6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한 심의

제 19조 <소집>

첫 정기운영위원회 소집 날짜는 당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곧 학생회 회의와 동일하게 여기도록 한다.

제 20조 <성립요건>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필수 참여해야 하며, 의장이 부재거나 부득이한 사유 시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 부의장, 재정부장 중 2명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학년 대표, 집행부는 최소 6인 이상이 참여한다. 단, 집행부나 학년 대표의 수가 적거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 되었을 경우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때에 맞게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제 21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년 대표나 집행부 중 어느 한 쪽의 수가 적을 경우 그 투표권은 의장, 부의장이 조정한다.

[제 4장 학생회장단]

제 22조 <구성>

사학과 학생회장단(이하 '회장단')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장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23조 <지위>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 부재 시 의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 24조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차기 회장단 선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거 종료 7일 이후 임기가 종료된다.
3. 선거가 무산된 경우 무산 공고 직후 임기가 종료된다.

제 25조 <자격>

1. 본회 회장단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2. 본회 회장단의 경우 임기를 제외하고는 차기 학생회의 조연자의 자격이 주어지며, 전대 학생회는 차기 학생회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제 26조 <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본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 본회의 집행부는 개인의 요청이나, 요구로 학생회장이 임명 가능하다. 또한 학년 대표는 모집을 통함과 각자 학년 별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단, 학년 대표의 경우 선발 기간을 매년 1학기 이전, 혹은 2학기 말에 차기 학년 대표를 모집해도 무방하다.
-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단과대학 학과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요구사항을 단과대 학생회에 전달한다.
- 부학생회장과 집행부의 업무에 관여하고 보좌한다.

2. 부학생회장

- 학생회장에게 학과 내의 모든 일에 대해 항시 설명을 들어야 한다.
-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에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조 <인수인계>

1. 차기 학생회에게 인수인계는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 이전인 12월 중순에 시작한다.
2. 인수인계 일자는 당대 학생회가 12월에 한 해 자유로이 조정 가능하며, 차기 학생회에게 한글 파일, ppt, 연락처 등 적어도 3개 이상은 넘겨주어야 한다.
3. 전대 학생회는 차기 학생회의 질문에 있어 필수적으로 대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단, 전대 학생회의 시간을 고려하여 무리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제 5장 집행부]

제 28조 <지위>

사학과 집행부(이하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다.

제 29조 <선출 및 임기>

1. 집행부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집행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집행부는 회장단이 공고, 선택하여 임명한다.

제 30조 <구성>

1. 집행부는 각 부서 집행부장, 집행부 차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부서의 명칭이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장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3. 회장단은 첫 총회 때 집행부 구성안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 및 의결하고 시행한다.
4. 학기 중 집행부서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5. 별도의 집행부서가 필요한 경우 학생회 회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제 31조 <업무>

- 학생회의 각 7부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상호 상관하며 소통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결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운영위원회 채팅 방에서 과반수의 투표를 받는다. 단, 그 업무에 대한 부서의 부장들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① 재정부

1. 본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2. 재정 사용 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사용에 대해 본회의 회원들에게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4. 재정 사용에 대한 사항은 학과 회의실에 비치하고 학과 학년 별 단톡방, 종강총회 때 공지할 게시할 의무를 지닌다.
5. 감사 업무에 있어 재 정부는 회장단과 소통할 의무를 지닌다.
6. 재정차장은 재정부장을 보좌한다.
7. 재정차장은 재정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회장단 다음으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단, 재정차장이 공석일 시 예외로 한다.

② 답사부

1. 답사부장은 답사에 관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2. 답사의 참가비용은 답사부에서 관리하고 공지한다.
3. 답사준비위원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단, 지원자가 많을 시 당해 답사부의 재량대로 처리한다.
4. 답사차장은 답사부장을 보좌한다.
5. 답사차장은 답사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회장단 다음으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③ 기획부

1. 기획부장은 본회의 행사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그에 따른 준비 작업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2. 기획부의 행사에 쓰이는 예산은 당해 재정부의 예산지출 계획을 참조하여 구성한다. 단, 재정부와 회장단의 동의를 얻은 후 행사를 진행한다.
3. 기획차장은 기획부장을 보좌한다.
4. 본회 회원들의 행사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5. 기획차장은 기획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회장단 다음으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④ 홍보부

1. 본회의 자보활동을 총괄한다.
2. 홍보부장은 총회와 같은 학과 행사를 필두로 기획부가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에 대한 저작물을 제작하고 게시한다.
3. 홍보부는 사학과 SNS를 관리하며, 답사 또는 각종 행사에 관한 내용을 사학과 인스타그램에 공지할 업무를 지닌다.
4. 홍보부는 정기 답사 시에는 사무실에 비치된 카메라로, 각종 행사 시에는 감사나, 이후 홍보 용도로 쓰일 행사 사진을 찍어야 한다.
5. 홍보차장은 홍보부장을 보좌한다.
6. 홍보차장은 홍보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회장단 다음으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⑤ 편집부

1. 기획부와 같이 본회 정기 간행물 발행 활동(사이모 등)을 책임지며, 재정부와 회장단의 동의를 구한 뒤 당해 편집부에서 재량껏 추가 제작 가능하다.
2. 편집부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 내용 및 일정에 대한 기록, 비치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차장은 편집부장을 보좌한다.
4. 편집차장은 편집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회장단 다음으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⑥ 학술부

1. 학술제, 논문발표회와 같은 본회의 학술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2. 정기 답사 전, 편집부와 협업하여 답사지를 제작한다.
3. 학술차장은 학술부장을 보좌한다.
4. 학술차장은 학술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회장단 다음으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⑦ 체육부

1. 체육부장은 본회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총괄하고 책임진다.
2. 매년 학기 전 재정부와 회장단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잠을 제작하고 디자인한다.
3. 답사에 참가하는 본회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구급함을 대여하여 소지하고, 만일 위급상황 발생 시 체육부 중 한 명은 병원으로 동행한다.
4. 체육대회 준비와 체육대회 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5. 체육차장은 체육부장을 보좌한다.
6. 체육차장은 체육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회장단 다음으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제 32조 <책임 및 권한>

1. 집행부는 학생회 전반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2. 각 집행부장은 제 2장 총회 11조 <소집>의 해당하는 집행부의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한다.
3. 총회가 무산될 시 제 3장 운영위원회 17조 <업무 및 권한> 1항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구두나 SNS로 통보할 수 있다.

[제 6장 학년 대표]

제 33조 <지위>

1. 학년 대표는 각 학년의 의견을 수렴, 종합, 대변하는 대표자들이다. 또한 총대의원회의 대의원이며, 사학과 운영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학년 대표가 없거나 부재일 경우 학생회가 역할을 한시적으로 대행한다.
3. 학년 대표는 학생회 회의(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각 학년의 의견을 대변하고, 회의 안건에 관한 투표권을 가진다. 단, 근거없는 비난이나 사적인 관계로 인해 명확한 사유없이 반발한다면 이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된다.

제 34조 <구성>

학년 대표는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표 지원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년 대표로만 구성해도 무방하다.

제 35조 <선발 및 임기>

1. 학기 전후 선발 시 선발 적격자가 없을 경우 기존의 대표가 활동해야 한다.
2. 임기 중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된다면 재선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선발 기간은 제 4장 회장단 24조 <업무 및 권한>에 의거한다.

제 36조 <업무 및 권한>

1. 해당 학년 학우들의 의견 수렴 및 대변
2. 각 학년 학우들에게 본회 제반사항 공지
3. 기타 운영기구 참석 권한
4. 본회 학생회(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 권한
5. 회의 안건 발의 권한
6. 해당 학년의 각종 친목도모 활동 주도

[제 7장 재정]

제 3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제 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매 학기 종강총회 시에 재정부에서 내역을 보고한다.

제 39조 <학과 학생회비>

1. 학과 학생회비는 매 학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납부 금액은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학기 당 5만원 이하로 책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미납한 학기가 있으면 누적하여 책정이 가능하다. 단, 납부 이전까지 학생회비가 소요되는 행사 참여는 불가하다.
3. 학생회비의 납부 기간은 개강 총회시 납부를 공고 후 3주 이내로 한다. 단, 당해 학생회에서 예산이 부족할 시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4. 전과, 편입, 자퇴 등으로 인한 학생회비의 환급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사안이 급할 시에는 회장단과 재정부에서 처리한다.

제 40조 <편성>

1. 각 학기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책정한다. 단, 예산을 담당하는 재 정부가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
2. 책정된 예산안은 본회의 정회원 중 2/3의 반대 할 시 재책정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산안은 학기 첫 정기총회 전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1조 <집행>

1. 각 기구는 모든 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기총회의 의결 하에 집행한다.

제 42조 <예·결산>

1. 예·결산은 매학기 말 집행부가 진행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은 회장단 관할 하에 집행하고 종합한다.
3. 학과 학생회비 예·결산 감사 심의는 회칙 제 2장 총회 11조 <업무와 권한> 2항에 의거하여 정기총회에서 진행한다.

[제 8장 선거]

제 43조 <선거 시기>

1. 회장단 선거 및 학년 대표 선거는 매년 11~12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 학년 대표 선거 시기는 1학기 정기총회 전까진 실시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 학기 시작 후부터, 4월 이전에는 마무리를 선거를 완료한다.
2. 정확한 정기 선거 시기는 운영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 44조 <선거성립요건 및 기타 선거>

1. 선거는 본회의 정회원의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성립된다.
2. 회장단, 학년 대표는 정회원들의 직접 선거의 의해 선출한다.
3. 단일 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4. 입후보 등록은 투표일 2주 전부터 진행하며, 선거유세는 일주일 전부터 투표 전날까지 할 수 있다.
5. 투표는 당일 10시 SNS로 투표 공지를 올리며, 18시에 투표를 마감한다. 단, 기타 선거의 성립 요건, 방법, 시행세칙의 경우 당해 학생회 재량에 맡긴다.

제 45조 <회장단 출마 원칙>

1. 회장단의 출마는 정후보, 부후보의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
2. 정회원 중 누구나 회장단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제 46조 <학년 대표 선거>

차기 혹은 당해 학년 대표 선거 기간 및 방법 등은 당해 학생회 재량에 맡긴다.

제 47조 <선거시행세칙>

회장단, 학년 대표,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학과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9장 비상대책위원회]

제 48조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24시간 후 구성된다.

1. 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및 의결
2. 선거가 무산되어 궐위인 경우
3. 기타 사유로 기존 학생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 49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학년 대표가 비대위원이 되고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은 각각 비대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2. 각 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공고한다.
 - 1) 비대위의 구성 사유
 - 2) 비대위 구성원
 - 3) 비대위 일정

제 50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1. 비대위원장은 본회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2.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 및 회의를 주재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비대위원장이 부재일 경우 부비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51조 <권한 및 업무>

1. 비대위는 본회의 상시적 업무를 최대한 담당한다.
2. 총회가 성사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52조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비대위는 보궐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한 이후, 이의제기가 없을 시 7일 이내에 해산한다.

[제 10장 답사]

제 53조 <시기>

정기 답사는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1년에 2번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4조 <참석 여부>

1. 정기 답사는 졸업의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며, 14년도 2학기 이후의 졸업생부터 6번 참석함을 졸업의 요건으로 삼는다.
2. 재학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답사를 못 간 인원들의 답사 인정 횟수는 아래와 같다.
(※ 22학번 이전만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 1) 4학기 재학 시, 3번 인정.
 - 2) 3학기 재학 시, 2번 인정.
 - 3) 2학기 재학 시, 1번 인정.
3. 전과, 편입생의 경우 총 6회의 답사 횟수 중 3번을 감하여 준다.
4. 이 사항은 본회 교수님들의 회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5. 기타 사유로 답사에 참여하지 못 할 경우 답사 여부를 묻는 학기 이전에 학생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55조 <답사 준비>

1. 답사부는 정기 답사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
2. 다음 학기의 정기 답사를 위해 답사부를 포함한 4인이 방학 중 매 학기 시작 최소 1달 반 전에 방문한다.
3. 사전 답사의 참가인원은 본회 운영위원회 중 답사부를 제외한 2~3인이 참여 가능하다. 단, 답사부·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답사에 동행하지 못한다면, 학회장 또는 부학회장이 주도하여 사전 답사를 가도록 한다.
4. 사전 답사 시 소모 비용은 정기 답사 예산안에 넣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한다. 단, 1박 2일 혹은 2박 3일 사전 답사의 경우 소모금액을 50만원 이하로 책정하며, 명백한 기타 사유없이 금액 사용시 본인 부담금으로 돌리도록 한다.
5. 답사는 답사부를 필두로 한 학생회에서 기획하며, 매학기 첫 정기총회에 가 예산안, 계획, 답사지를 본회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56조 <사전답사>

다음 학기의 답사는 방학 중에 준비하며 사전 답사 또한 방학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7조 <답사준비위원회>

1. 사학과 답사준비위원회(이하 '답준위')는 정기 답사 계획을 담당하도록 집행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이다.
2. 답준위의 위원장은 답사부장이 맡으며, 사전 답사에 참가하는 인원을 포함한 4인에 회장단 2명으로 총 6인 혹은 그 이하로 구성한다. 단, 비대위 구성이나 답사부가 결원이 있을 시 비대위원장 혹은

회장단이 위원장을 맡는다.

3. 답사 준비는 제10장 답사 53조 <답사 준비> 2~4항에 의거한다.
4. 답준위는 사전 답사 이후 첫 운영위원회 회의(학생회 회의)부터 꾸준히 정기 답사 준비의 진행도를 브리핑한다.

제 58조 <답사비 환급>

- 답사비 환급은 크게 답사 전과 답사 후로 나뉜다.

***답사 전**

1. 답사 전 답사비 환급의 경우 특이사항이 아닌 이상 환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답사 참가에 이상이 생겼다면 적어도 답사 전 3주 내에 답사부장 혹은 답준위의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답준위에서 이를 심의하여 환급하도록 한다.
2. 답사 전 부득이한 사유, 친인척(직계존속, 비속)의 상(喪) 혹은 사고 등으로 답사의 불참이 확인될 경우 답사비를 환급하도록 한다.

***답사 후**

1. 답사 후 환급의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답사에 참가하는 본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한다.
2. 단, 개인에게 돌아갈 환급금은 천원 단위 이상으로 절사하여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학생회비로 전환한다.

[제 11장 회칙개정]

제 59조 <발의>

- 본회 회칙 개정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의 학생회칙 개정발의권
2. 본회 정회원 1/5 이상의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제 60조 <의결 및 공고>

1. 발의 시 학생회장은 이를 총회에서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다. 의결이 된다면 이를 3일 이내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고한 당일의 총회의 참가자가 본회의 회원 중 2/3라면 동의를 구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3. 의결을 목적으로 한 임시 총회가 무산, 좌절된다면, 공고일 이후 1달 이내에 본회의 운영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다.
4. 학생회칙 개정을 목적으로 한 임시 총회 시 출석회원(정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1조 <공포 및 효력 발생>

1. 의결된 개정안은 3일 이내 회장단이 공포한다.
2. 개정된 학칙은 공포 7일 후부터 실효성을 갖는다.

제 62조 <이의신청>

1. 본회의 정회원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7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답변할 의무를 지닌다.
3.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자가 본회의 정회원 중 1/5이면, 그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자들과 논의하여 이의제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재공포 하도록 한다.